

약관 변경 수시공시

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22 조(수시공시) 및 신탁약관 제 51 조(수익자에 대한 공고등)에 따라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.

1. 투자신탁의 명칭: Tops 아시아 자산배분 재간접투자신탁 1 호

2. 시행일 : 2008. 9. 1.

3. 신탁약관 변경 주요 내용

◇ 변경 사유 :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추가

◇ 변경 대비표

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	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
<p>제 36 조(투자대상등) ①(생략) 1~5.(생략) 6.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CD 금리선물, 통안증권금리선물,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및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통화선물 및 통화옵션(이하 “채권및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”이라 한다) 7~10.(생략) ②(생략)</p>	<p>제 36 조(투자대상등) ①(현행과 같음) 1~5.(현행과 같음) 6. 법 제 2 조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·채권 및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(해외포함. 다만,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. 이하 “장내파생상품”이라 한다) 7~10.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37 조(투자한도) ①(생략) 1~6.(생략) 7. 채권및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%이하가 되도록 한다. 8.(생략) ②(생략)</p>	<p>제 37 조(투자한도) ①(현행과 같음) 1~6.(현행과 같음) 7.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%이하가 되도록 한다. 8.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</p>
<p><부칙 신설></p>	<p>부 칙 (시행일) 이 신탁약관은 2008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</p>